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문영민 의원 (찬성자 11명)

나. 의안번호 : 제 2042 호

다. 발의일자 : 2017. 8. 14.

라. 회부일자 : 2017. 8. 17.

2. 제안이유

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로 변경함(제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상위 근거 법령인 「지진재해대책법」이 2016. 1. 25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바림직한 조치이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¹⁾

-
- 1)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